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서초2 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 경 영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2017년에 조성된 문화비축기지는 과거 석유비축기지로 사용되던 지역을 2013년 시민 공모를 통해 문화공원으로 조성한 것으로 사용이 중지된 석유비축 탱크는 6개의 문화공간으로 재생하여 공연장, 강의실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

□ 하지만 문화비축기지 내 시설의 경우 기존 공원시설과는 시설 사용에 있어 큰 차이가 있으며 현재 이용료의 근거로 삼고 있는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의 부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이 다수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보여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비축기지

의 이용료 부과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합니다.

□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 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진 시설의 대여료를 강의실 대여료 산정에 따르도록 하고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하며, 복합문화공간을 포함하는 공연장과 옥상공간에 대한 이용료를 신설을 담고 있습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